

2026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제2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신청 공고

KPIPA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와 고품질 전자책 확충을 위한 「2026년 제2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05.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목적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고품질 전자책 확충

사업내용 전자책 제작비 지원 및 품질 검수, 제작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지원 개요

지원대상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유통하려는 출판사

지원형식 EPUB 2.0, EPUB 3.0(장애인 접근성)

지원규모 약 450백만원(EPUB 2.0/3.0 총 700종 내외)

* 지원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사항	<p>① 전자책 제작비 지원(연 3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UB 2.0: 종당 최대 50만 원 지원 - EPUB 3.0: 종당 최대 350만 원 지원 <p>* EPUB 2.0/3.0 제작 및 검수 통과 후 지원 금액 산정 기준(붙임2 참고)에 따라 지급</p> <p>② 전자책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전자책 품질 검수 지원, 그에 따른 제작 컨설팅 제공
지원 방법	<p>① 출판사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한 도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별 신청 최대 20종 가능, 동일 저자 도서 최대 20종 제한(회차별 공통 적용) <p>② 선정도서 전자책 제작 및 유통 증빙자료 검토 후 출판사별 지원금 일괄 지급</p>
지원 조건 (필수)	<p>① 신청 도서(콘텐츠): 출간 도서(종이책) 및 미출간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간 도서(종이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간행물”로서 종이책 ISBN(13자리)을 발급받은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p> <p>「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출판사 2. 「도서관법」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제로 갈음할 수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간 원고: 완결성을 갖춘 출간 예정의 최종 원고(완고 기준) * 종이책 ISBN을 미리 발급한 경우, 출간 예정이라 하더라도 출간 도서로 판단 <p>② 저작권 확보: 신청 도서가 모든 저작권자(글·그림·사진 저자, 역자 등)와의 계약에서 출간 및 전자출판 관련 권리나 저작권 설정이 명확해야 함</p> <p>③ 제작 기준 및 품질 준수: 진흥원 기준에 따른 품질 검수를 통과해야 함</p> <p>④ 제작 지원 문구 표기: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에 제작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함</p> <p>⑤ 제작물 유통: 제작을 마친 전자책을 온라인 서점 등에 유통해야 함</p> <p>⑥ 증빙서류 제출: 제작 증빙서류(제작 내역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등)와 유통·지원 문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p> <p>⑦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전자책 ISBN 발급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반드시 납본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납본 시스템’ ISBN 발급 및 서지정보 정정 신청은 업무일 기준 약 3일 소요되므로 사업 접수 및 증빙 제출 마감일 고려하여 준비 요함 <p>⑧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증: 권고사항이나, 사업 신청 시 기증 의사를 밝힌 전자책은 반드시 기증해야 함</p> <p>⑨ 보완 의무: 진흥원 검수 결과에 따라 제작물 및 서류를 보완·제작해야 하며, 제작 완료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p>

신청 및 선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6. 6. 2.(화) 10시 ~ 6. 11.(목) 16시까지 [10일간]								
신청 방법	<p>① 전자책바로센터(baro.kpipa.or.kr) 로그인 ▶ ‘전자책 제작’ 온라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바로센터(‘24년 개편) 가입 필수, 허위 번호 가입 및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자등록번호 기준 출판사당 1개의 계정만 생성 가능 -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 가입 필수, 종이책 메타데이터 등록* 권고 * 메타데이터 등록 후 사업 신청 시, 신청도서 정보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신청 내용 확인 방법: 로그인 ▶ 화면 오른쪽 위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클릭 								
사업 신청 제출 서류 (필수)	<p>① 확인서: 신청 도서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제공 양식만 사용, 양식 내 작성 방법 숙지 후 작성 ※ 하기 표와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도서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핵심 조항 준수확인서’ 미허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서</td> <td>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td> </tr> <tr> <td>외서 (번역서)</td> <td>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서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td> </tr> <tr> <td>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국내서·외서)</td> <td>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망인)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국내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외서 (번역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서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국내서·외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망인)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구분	내용								
국내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저자)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외서 (번역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서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원저자, 그림작가, 사진작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p>대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저작권자(역자, 역주, 역해 등)와 출판권자(출판사 대표)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동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해당 시 제출 								
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국내서·외서)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망인)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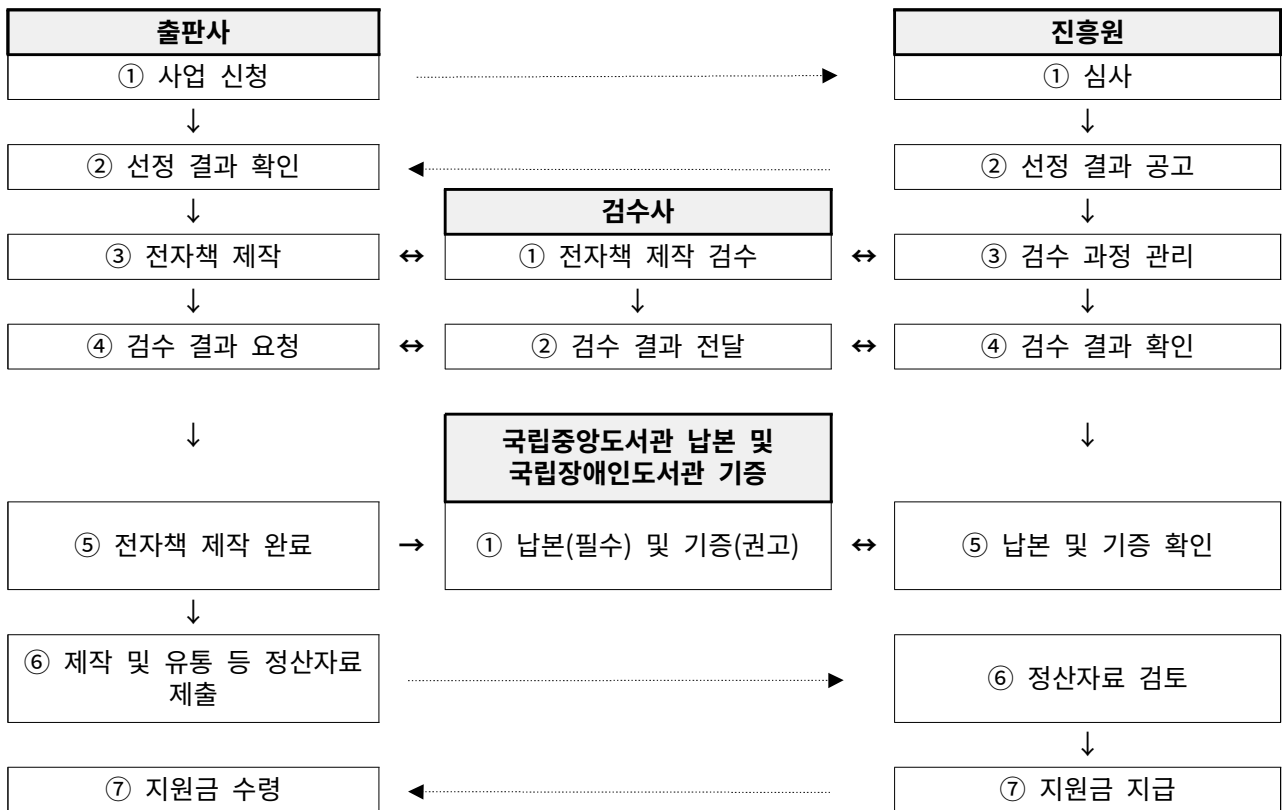
구분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td> <td>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 만료 *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란에 망인명, 상속자명 기입 *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블러 처리) <p>▪ 계약 기간 미만료 :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p>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참고</td> <td> <p>저작권법</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②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 <p>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p> <p>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이 관에 규정된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 <p>제53조(저작권의 등록)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p>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p> <p>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p> <p>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 </td> </tr> </table> <p>② 심사 원고: 신청 도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원고 일부를 PDF 파일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표지 + 목차 + 전체 원고(본문) 분량의 10%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서점 ‘미리보기’ 형태에 준함(요약본, 기획안 등 이외 양식 미허용) ※ 제출 분량이 전체 원고(본문)의 10%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량 심사 미반영 (단, 그림책과 같이 전체 분량이 적은 도서의 경우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출 허용) ※ 발췌 위치 제한 없음 - 앞표지, 목차 필수 제출, 미포함 시 심사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간 원고 앞표지 생략 가능, 그림책 목차 생략 가능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 만료 *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란에 망인명, 상속자명 기입 *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블러 처리) <p>▪ 계약 기간 미만료 :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p>	참고	<p>저작권법</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②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 <p>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p> <p>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이 관에 규정된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 <p>제53조(저작권의 등록)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p>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p> <p>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p> <p>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기간 만료 *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란에 망인명, 상속자명 기입 *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블러 처리) <p>▪ 계약 기간 미만료 :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p>				
참고	<p>저작권법</p> <p>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②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p> <p>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 <p>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p> <p>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이 관에 규정된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 <p>제53조(저작권의 등록)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p>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p> <p>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p> <p>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p>				

구분	내용								
제작 완료 제출 서류 (필수)	<p>① 제작 증빙: 선정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였다는 증빙서류 -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진흥원 양식) - 제작사 전자세금계산서: ‘외주 제작’ 시 제출, 자체 제작했을 경우 해당 없음</p> <p>② 유통 증빙: 전자책 제작물을 유통한 유통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p> <p>③ 지원 문구 증빙: 제작 지원 문구를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에 아래와 같이 표기 후 캡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이 콘텐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p> </div> <p>④ 통장 사본: 출판사 또는 출판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 ※ 선정 후 발송되는 안내 매뉴얼 속지 후 제출</p>								
심사 방법	<p>① 심사위원회 구성: 전문 심사위원 6명 내외 구성</p> <p>② 심사 방법: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서 및 심사 원고로 신청 도서(콘텐츠) 평가</p> <p>③ 심사 기준(안)</p> <table border="1" data-bbox="352 869 1374 116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성 (40)</td> <td>·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td> </tr> <tr> <td>우수성 (60)</td> <td>·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 도서의 주제성, 독창성, 접근성</td> </tr> <tr> <td>가산점 (2)</td> <td>· 신간 도서(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 ·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획성 (40)	·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	우수성 (60)	·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 도서의 주제성, 독창성, 접근성	가산점 (2)	· 신간 도서(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 ·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
구분	내용								
기획성 (40)	·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								
우수성 (60)	·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 도서의 주제성, 독창성, 접근성								
가산점 (2)	· 신간 도서(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 ·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								
심사 및 선정 제외	<p>① 신청 도서가 본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선정 결과 공고일 이전에 이미 전자책이 유통 중인 도서(콘텐츠) ※ 오디오북 외 모든 파일 형식의 전자책(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포함)</p> <p>② 공고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출판유통통합전산망(bnk.kpipa.or.kr)’에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출판사의 도서(콘텐츠)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분산돼 있는 출판유통정보를 통합관리합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메타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면 연계기관 및 모든 서점의 시스템에 신속하게 전달됩니다.</p> <p>③ 저작권자와의 출판 및 전자출판에 대한 저작권·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콘텐츠)</p> <p>④ 제출 서류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제출 서류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입, 오기입,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p> <p>⑤ 미완결 콘텐츠, 단일 콘텐츠로서 완결성이 없는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 단행본의 일부 챕터 또는 요약본</p> <p>⑥ 학습 교재류, 정기간행물, 학회지, 외국어 도서 등</p> <p>⑦ 제작 완료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p>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1차
모집 공고	5.28.(목)~6.11.(목), 15일
신청서 접수	6.2.(화)~6.11.(목), 10일
심사위원회 개최	6월 말
선정 결과 발표	7.8.(수)
E PUB 전자책 제작 교육	7월 중
전자책 제작, 검수 및 컨설팅	7.9.(목)~8.19.(수)
전자책 납본, 유통, 증빙자료 제출 마감	8.20.(목)
제작 지원비 지급	9월 초

추진 절차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사업공고 및 안내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사에 있습니다.
 - ※ 제출 서류, 기입 정보, 날인 또는 서명 등 명확히 확인 필요
- 사업 신청에 앞서 ‘전자책바로센터’ 및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전자책바로센터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 및 자료는 회수가 불가능하며, 제출을 완료하면 지원이력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도서는 저작권자(저자, 역자, 그림작가 등)와 출판권설정계약,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또는 공중송신권 체결 등 저작권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내 서명은 자필 서명, 도장, 전자 서명(서명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등이 확인되어야 함), 전자 도장만 허용합니다.
 - ※ 한글(hwp), PDF 등 문서 파일 내 글꼴, 그리기 개체 등으로 서명 시 미제출로 간주
- 선정 도서의 전자책 제작 형태(EPUB 2.0/EPUB 3.0)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선정된 모든 출판사가 제작·납본·유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완료 후, 진흥원의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지급됩니다.
- 선정 취소 및 선정 후 사업 수행 불가 도서는 다음 차시 및 차년도 본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 상기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심사 및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표절 및 복제 등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

문의

디지털콘텐츠팀

연락처 : 063-219-2759

이메일 : ebookbaro7@kpipa.or.kr